

##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정선군	심의일자	2024-10-25		
건축종별	[ ] 신축,	[ ] 증축,	[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] 대수선,	[ ] 기타	
건축주	성명(법인명)	(주)강원랜드	*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		
대지현황	대지위치	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읍			
	지번	424 -	관련지번	0	
	대지면적	272888 m <sup>2</sup>	용도지역(지구,지역)	지구단위계획구역,개발진흥지구,계획관리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7377.09 m <sup>2</sup>	건폐율	13.6968 %	층수 지하: 층/지상: 24 층
	주용도	숙박시설	구조	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동
	최고높이	104.4 m	용적률	59.19 %	연면적 합계 161527.73 m <sup>2</sup>
심의내용	구분	주요 심의결과			
	( 종합 )분야	제2024-5호 건축구조 전문위원회(해체) 심의(변경) '원안의결' 도시과-47970(2024.11.01.)			
심의결과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의결 [ ] 조건부의결 [ ] 재검토의결 [ ] 부결				
	*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</li><li>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li><li>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li><li>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)</li></ul>				